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,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며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됨에 따라,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일반택시운송사업	30대 이상	20대 이상 (부산광역시의 경우 30대 이상)	20대 이상	5대 이상
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

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중 “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시·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하고, “4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